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72호 2019. 2. 7.(목)

공 고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8
-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0
- 2019년도 목포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고 ----- 50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54

회람							
----	--	--	--	--	--	--	--

목포시 공고 제2019-113호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지방재정법」이 재정부분(지방재정법)과 회계부분(지방회계법)으로 분류되는 등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관련법규 및 조항 변경
 -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변경,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8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 없음

8. 예산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2019. 2. 7. ~ 2019. 2. 27. (21일 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27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 061-270-3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3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감사기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6 4 (22) 7 7 6 2	
		18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삭제 ※ 추가배점 불가	(6) (5) (4) (3) 삭제	
		20	
3. 지역주민이용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기업 및 가계자금 대출실적	(5) (6) (7) (2)	
		2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세정정보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	(5) (7) (7) (2)	
		9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5) (4)	

붙임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목포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금고”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 ⑥ (생략)	제2조(정의) ----- -----. ① ----- ----- ----- ----- ----- 「지방회계법」 제38조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금고의 지정) ① (생략)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	제3조(금고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지방회계법」 제38조제3항

에 따라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생략)

제11조(지정 절차) ① 「시장은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을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은행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목포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함)에 통보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정 절차) ① -----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1]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제4조 관련)				[별표 1]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제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1. 금융 기 관 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생 략) ※ 「지방재정법」 제77조 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 사만으로 전체 배점(10 점)을 평가	(10)		1. 금융 기 관 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생 략) ※ 「지방회계법」 제38조 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 사만으로 전체 배점(10 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생 략) ※ 「지방재정법」 제77조 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생 략)	(2)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생 략) ※ 「지방회계법」 제38조 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생 략)	(2)	

붙임 2**관련법령****[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붙임 3**현행 조례****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목포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금고”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12.17>
- ②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 ③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 ④ “기금”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2.12.17>
- ⑤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⑥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7.6.5>

제3조(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7, 2015. 6. 1.>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2015. 6. 1.>

2.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신설 2015. 6. 1.>

3. 삭제<2012. 12. 17>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12. 17, 2015. 6. 1.>

③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개정 2015. 6. 1.>

제4조(평가기준) ①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인 신용도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4. 재무구조의 안정성

5. 금고업무의 관리능력

6.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개정 2012·12·17>

7. 그 밖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시장은 금고지정관련 협력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1. 협력사업비(출연금) 처리방법은 금고약정서에 명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개정 2012.12.17>

2.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3. 제2호에 따라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

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시의회 의원
-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심의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고제안의 제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해촉 후에도 또한 같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심의사항
-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시금고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금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사망·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지정 절차) ① 시장은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은행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목포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함)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2.12.17>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심사표를 바탕으로 금고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

제12조(금고약정) ① 금고를 지정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약정을 체결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목포시 표준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2.17>

④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

제13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③ 중도 해지시 재계약은 당초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2015. 6. 1.>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등 자금관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1.>

③ <삭제 2017.6.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12.17 조2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4.10 조27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5. 6. 1. 조2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6. 5. 조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목포시 공고 제2019-114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기한 연장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41호, 일부개정 2018. 12. 24.)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일몰 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 기한 연장 : 2018. 12. 31 => 2021. 12. 31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세 대한 감면 (안 제2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45)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 기한 연장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제38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 없음

8. 예산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2019. 2. 7. ~ 2019. 2. 27. (21일 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지방세심의회 심의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세정과 - 775 (2019. 1. 17)) => 적정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27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 061-270-3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1

신 · 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2021년 12월 31일 -----

< 삭 제 >

4. 이륜자동차

② ~ ④ (생략)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 1호에 -----

-----2020년 12월 31일

-----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삭제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2021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1년 12월 3

1일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2021년 12월 31

일 -----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021년 12월 31일-----.

붙임 2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감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

[제목개정 2010. 12. 27.]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

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6. 12. 27., 2018.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학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③ 삭제 <2018. 12. 24.>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붙임 3**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목 포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 결정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가. 일 시 : 2019. 1. 16 ~ 1. 17

나. 방 식 : 서면심의(방문설명)

다. 방문대상 : 지방세심의위원 10명

2. 심의 안건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기한 연장등 개정안 결정 심의

3. 심의 결과 : **적정** (10명의 위원 중 10명의 위원이 적정함을 심의함)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개정 절차 진행

가. 입법 예고 : 2019. 2. 7 ~ 2. 27(21일간)

나. 의회 부의 : 제345회 임시회 (3월예정)

붙임 1.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 1부.

2.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 1부. 끝.

실무관

세정책임관

세정과장

전결 2019. 1. 17.

협조자

시행 세정과-775

접수

우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

/ <http://www.mokpo.go.kr/>

전화번호 270-3486

팩스번호 270-3580

/ wjd27@korea.kr

/ 대국민 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

□ 심의안건

- 일몰기한이 도래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기한 연장
: 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제1항의 각호는 조문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나열
⇒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안 제2조제1항 각호)

2019. 1. .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의 건		비 고
				적정	부적정	
위 원 장	목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 현 상	조현상	○		
부위원장	기획문화국장	배 석 인	배석인	○		
위 원	세 정 과 장	박 남 규	박남규	○		
"	민원봉사실장	문 태 식	문태식	○		
"	도시계획과장	권 장 주	권장주	○		
"	변 호 사	조 용 안	조용안	○		
"	세 무 사	김 오 수	김오수	○		
"	공인회계사	김 정 모	김정모	○		
"	공인회계사	최 정 미	최정미	○		
"	법 무 사	정 영 희	정영희	○		

붙임 4**현행 조례****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 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6.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6.5.>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7.6.5.>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5.>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5.8.>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6.5.>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 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6.5, 2018.5.8.>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6.5.>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

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게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게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5.8.>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6.5.>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개정 2018.5.8.>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조제목개정 2018.5.8.]

제3장 보 칙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5>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2012.3.30 조2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 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에 따른다.

부 칙 <2014.5.12 조28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 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6.6.7 조3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6.5 조3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2018.5.8. 조31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목포시 공고 제2019-139호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목 포 시 장

1. 개정사유

- 마이스(MICE)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한 MICE 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모바일 앱 개발·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한 모바일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 육성
-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구체적인 등록기준 마련을 통한 관광 사업자의 행정적 편의 증진 및 규제 완화 도모

2. 주요내용

- 마이스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안 제13조)
 - 시장은 국제·국내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의를 유치·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안 제14조)
 -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모바일 앱 운영(안 제16조)
 - 시장은 관광객에게 관광지·문화유적지·설화·스토리텔링·지역정보·지역축제·교

통·숙박·음식점·지도 등 정보 제공을 위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운영할 수 있음.

- 모바일 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품, 재래시장상품권, 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모바일앱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모바일 앱 이용대상자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으로 함.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5. 관련법령

○ 휴양콘도미니엄업 관련 법령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정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개선사항없음(성별영향평가관리 번호 : 2019A전남목포004)

7. 입법예고 기간 (초일 불산입 20일 이상) : 2019. 2. 7.~2. 27.

8.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27일까지 목포시장(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관광과

다. 제출 방법 : 우편, 팩스(061-270-8569), 직접방문 등

9.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관광과(☎061-270-8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gress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이라 한다)이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8.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며, 제13조, 제14조,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국제·국내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의를 유치·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마이스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카드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휴양콘도미니엄 등록) 휴양콘도미니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 중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모바일 앱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관광지·문화유적지·설화·스토리텔링·지역정보·지역축제·교통·숙박·음식점·지도 등 정보 제공을

위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품, 상품권, 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모바일앱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모바일 앱 이용대상자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 중 “제13조”를 “제17조(보조금)”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 중 “제14조”를 “제18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제17조”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5장 업무의위탁 등”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을 삽입한다.

제21조 앞에 “제6장 관광협의회”를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5장 업무의위탁 등”을 삽입한다.

제6장(제2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 앞에 “제6장 관광협의회”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마이스(MICE)산업</u> ”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u><신 설></u>	7. “ <u>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u> ”(이하 “ <u>모바일 앱</u> ”이라 한다)이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u><신 설></u>	8. “ <u>휴양콘도미니엄업</u> ”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u><신 설></u>	제13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국제·국내 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의를 유치·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마이스관광객

<신 설>

제13조 (생 략)

제14조(보조금)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제15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신 설>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카드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휴양콘도미니엄 등록) 휴양콘도미니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 중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7조(보조금) -----

제17조(보조금)-----

제18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제18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제17조-----

<삭 제>

제16조(모바일 앱 운영) ① 시장
은 관광객에게 관광지·문화유

적지 · 설화 · 스토리텔링 · 지역
정보 · 지역축제 · 교통 · 숙박 ·
음식점 · 지도 등 정보 제공을
위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 · 운영
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앱의 활성화를 위하
여 기념품, 상품권, 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모바일앱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모바일 앱 이용대상자는 내
·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으로 한
다.

제4장 관광안내소 설치 · 운영

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20조 · 제21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삭 제>

<삭 제>

제23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삭 제>

<신 설>

제16조 (생 략)

제17조 · 제18조 (생 략)

제5장 업무의위탁 등

제1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
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
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
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
련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생 략)

제6장 관광협의회

<신 설><신 설><신 설>제21조 · 제22조 (생 략)제23조 · 제24조 (생 략)제5장 업무의위탁 등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
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
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
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장 관광협의회

제24조 · 제25조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제26조 · 제27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9-148호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목포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목 포 시 장

□ 목포시장 : 서명인 수 28,066명($187,111 \times 0.15$)

(단위 : 명)

구 분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비 고
계	187,111		
용당1동	10,281	1,542	
용당2동	5,060	759	
연동	4,602	690	
산정동	7,601	1,140	
연산동	7,021	1,053	
원산동	11,339	1,701	
대성동	4,659	699	
목원동	7,727	1,159	
동명동	5,372	806	
삼학동	5,222	783	
만호동	3,084	463	
유달동	4,700	705	
죽교동	3,173	476	
북항동	8,145	1,222	
용해동	13,579	1,871	
이로동	8,426	1,264	
상동	14,810	1,871	
하당동	9,659	1,449	
신흥동	13,867	1,871	
삼향동	4,208	631	
옥암동	8,519	1,277	
부흥동	8,481	1,272	
부주동	17,576	1,871	

8개동 이상에서
각각 동별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94 ~ 1,871명)
($187,111 \times 0.0005 \sim 0.01$)

1. 청구 서명인수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2. 최소서명인수 : 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의 전체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할 서명인 수로는 해당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단, 최소서명인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총수의 5/10,000 미만인 경우는 5/10,000로 하고, 100/10,000초과하는 경우는 100/10,000으로 함)

□ 목포시의회 의원

○ 목포시의회 가 선거구 : 서명인수 6,388명($31,939 \times 0.2$)

(단위 : 명)

구 분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비 고
계	31,939		2개동 이상에서 각각 동별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16 ~ 319명) ($31,939 \times 0.0005 \sim 0.01$)
연산동	7,021	319	
원산동	11,339	319	
용해동	13,579	319	

○ 목포시의회 나 선거구 : 서명인수 4,716명($23,578 \times 0.2$)

(단위 : 명)

구 분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비 고
계	23,578		2개동 이상에서 각각 동별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12 ~ 236명) ($23,578 \times 0.0005 \sim 0.01$)
산정동	7,601	236	
대성동	4,659	236	
죽교동	3,173	236	
북항동	8,145	236	

○ 목포시의회 다 선거구 : 서명인수 4,177명($20,883 \times 0.2$)

(단위 : 명)

구 분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비 고
계	20,883		2개동 이상에서 각각 동별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10 ~ 209명) ($20,883 \times 0.0005 \sim 0.01$)
목원동	7,727	209	
동명동	5,372	209	
만호동	3,084	209	
유달동	4,700	209	

○ 목포시의회 라 선거구 : 서명인수 5,033명($25,165 \times 0.2$)

(단위 : 명)

구 분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비 고
계	25,165		2개동 이상에서 각각 동별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13 ~ 252명) ($25,165 \times 0.0005 \sim 0.01$)
용당1동	10,281	252	
용당2동	5,060	252	
연동	4,602	252	
삼학동	5,222	252	

○ 목포시의회 마 선거구 : 서명인수 3,617명($18,085 \times 0.2$)

(단위 : 명)

구 분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비 고
계	18,085		2개동 모두 각각 동별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9 ~ 181명) ($18,085 \times 0.0005 \sim 0.01$)
이로동	8,426	181	
하당동	9,659	181	

○ 목포시의회 바 선거구 : 서명인수 5,507명($27,537 \times 0.2$)

(단위 : 명)

구 분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비 고
계	27,537		2개동 이상에서 각각 동별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14 ~ 275명) ($27,537 \times 0.0005 \sim 0.01$)
상동	14,810	275	
삼향동	4,208	275	
옥암동	8,519	275	

○ 목포시의회 사 선거구 : 서명인수 7,985명($39,924 \times 0.2$)

(단위 : 명)

구 분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비 고
계	39,924		2개동 이상에서 각각 동별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20 ~ 399명) ($39,924 \times 0.0005 \sim 0.01$)
신흥동	13,867	399	
부흥동	8,481	399	
부주동	17,576	399	

※ 주민수 : '18. 12. 31.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19세이상의 주민

※ 선거권 없는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

※ 외국인 : '18. 12. 31.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목포시 공고 제2019-155호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목 포 시 장

1. 제정 이유

목포시의 근대 도시 형성기에 건립된 근대건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범위 및 조건(제19조)
-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제21조)
- 투기 억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제도적 장치 마련
 - 외지투기 세력 방지(제19조) : 목포시 거주 제한 등 설정(거주기간 합산 3년)
 - 공적자금 지원 시 : 일정기간 소유권 등 이전 제한 등 (제23조)
 - 소유권 등기상 공적자금 지원 사항 및 제한사항 등 기재 (제24조)
 - 구조 및 용도변경 시 위원회 심의(제26조)
 - 권리·의무승계시 지원받은 조건 등 승계서 기재후 제출 (제2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법」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개선사항 없음(성별영향평가 관리번호 : 2019A전남목포005)

6.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19. 2. 7. ~ 2019. 2. 27. (21일 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27일까지 목포시장(도시문화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 061-270-3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근대 도시 형성기에 건립된 근대건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역사문화유산의 개별적 가치와 함께 집합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 삶과 연결되어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세대에게 유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2. “근대건축문화유산”이란 근대역사문화공간에 19세기 개항기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근대건축문화유산·가로변건물·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개선·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 조성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4.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조성하고 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문화재 고증 및 학술조사, 보수·복원과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수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말한다.
5.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나.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체계적

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목포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목포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등록지역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목포시가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 관리 계획
2. 등록문화재 원형보존기반 정비사업 계획
3. 등록지역내 역사문화 주요거리 및 등록지역 주변 경계
4.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 및 보전사업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5조(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 ① 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제12조의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외관과 규모 및 용도 등 근대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지원대상과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2조의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축문화유산을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과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표지) ① 근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하여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표지 방법 및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①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이 훼손 등으로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점검 및 자료수집 등) ① 시장은 매년 관계 공무원에게 근대건축문화유산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점검된 내용을 포함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자료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과 관리내용에 대해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활용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5명 이하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수립
2.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3.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4.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범위·지원대상·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심의를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도시발전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역사·건축·도시계획·관광분야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7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지원

제19조(지원대상 등) ① 대상지역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원대상은 등록문화재와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한다.

- ② 근대건축문화유산이 아닌 일반건축물일지라도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원대상은 목포시에서 매입한 건축물을 우선대상으로 한다.
- ④ 지원받는 해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 3년 이상인 자
- ⑤ 지원대상 선정 시 필요할 경우 주민협의체를 참여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과 활용을 위하여 근대건축문화유산과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원형복원은 고증 및 학술조사를 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재청의 승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원 신청) ① 제20조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원형복원을 위한 고증 자료(사진, 도면, 설계도 등)와 학술조사 자료
 4. 건축물 및 토지대장, 건축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2조(지원 결정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원 대상에 대해서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2항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원받은 건축물을 전매(매매·증여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승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산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제공대상물 감정평가액에서 공적자금과 기담보 설정액을 제외한 잔액범위 한도
2. 대여의 경우 그로 인한 효용 증가부분에 대한 환수가 필요할 경우를 위하여 시장 승인 후 관리
3. 양도, 교환의 경우 지원받은 자가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사를 착수한 이후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제24조(부기등기 등) 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원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25조(사후관리 및 점검) 시장은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 사업에 따른 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지원 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구조 및 용도변경)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지원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27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지원받은 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소유자 등은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 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4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28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나 설치에 착수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지급조건을 어겨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자격조건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23조에 의한 제한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고증자료 및 학술자료가 충분치 않아 원형복원이 불가할 경우
7. 지원 받은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공익사업시행으로 매수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근대건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재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거나, 지원 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을 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중복지원 금지) ① 제22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와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다.

제30조(우수 근대건축자산의 매입) ① 시장은 우수한 근대건축자산을 매수하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매수대상 기준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문화재가 우선 구입대상이 되며, 우수 근대건축유산과 경관을 훼손시키는 건축물 순으로 매입한다.

③ 제1항에 매수에 관하여는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④ 매입대상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판제작 표지(제3조 관련)

동판제작(스탠드형)	동판제작(부착형)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 신청서

건 조 물 명 (건물대장)		위	치	
대 지 면 적	m ²	건 축 면 적 (건축연면적)	(m ²)	m ²
건 물 유 형		건 물 구 조		
건 물 용 도		건 물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건 축 연 도		건 축 가		
소 유 자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남/여)	
소유자주소		전 화 번 호		
건 축 물 현 황				
건 축 물 특 성				
신 청 사 유 (보존가치)	－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 신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목포시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기본(필수) 동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에 해당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확인과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정 신청서: 지정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지정신청서 접수·등록 불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 동의 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정번호			지정일시	년 월 일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남/여)		
	주 소	(전화번호)				
근대건조물 개요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구 조			최고높이	m	
	건립시기					
	건조물연혁					
	금 회 수리내역					
	소요금액	총 수리비용			원	
					원	
					원	
설계자 (건축신고, 건축허가의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비 고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근대건축문화유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현황사진, 수리가 필요한 근대건축문화유산 부분 사진 3. 설계서, 공정표, 공사비산정내역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함)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기본(필수) 동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별 보조금 지원범위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에 해당 건조물의 소유자의 확인과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신청서: 지원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지원신청서 접수·등록 불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 동의 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목포시장 귀하

근대건축문화유산명 :		사 진	
명 칭		명 칭	

[별지 제4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서

승계대상	위 치			용 도	
	수 량	(동, 개)		면적(규격)	(㎡, m)
지원현황	지원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근대건축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수선 ☐ 대수선	
			근대건축양식	☐ 신축 ☐ 증축 ☐ 개축 ☐ 수선 ☐ 수선 ☐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 담장 ☐ 대문 ☐ 가로경관 건축물 ☐ 간판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일	
권리 의무 승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성 명	(인) (전화:)		(인) (전화:)	
	생년월일				
	주 소				
	내 용	소유권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붙임서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관리대장

관리 번호				
명 칭	한글		한자	
	영문			
분 야		재 료		
구 조				
규격/크기				
수량/면적		년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내 용 (연혁, 유래, 전설)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일자	내용		

() 실 측 도

() 위 치 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